

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회사 임직원 교육 안내

1 교육목적

- 협력업체 육성을 위하여 국가계약법·원가, 건설제도 등 건설관련 교육지원 (상호협력평가항목 중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에 해당되는 교육)

2 일시·장소

- 일 시 : '15. 6.2(화), '15. 6.3(수), '15. 6.10(수), '15. 6.24(수)
- 장 소
 - 건설인재 평생교육원([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](#) 1층,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)

3 교육대상

- 협력회사 임직원(업무 실무자, 현장 기술자 등)
 - ※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,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만을 보유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님으로 상호협력평가의 협력업체에서 제외됩니다.

4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교육일 7일 전(공휴일 제외)까지, 선착순 모집
- 제출서류
 - 위탁계약서 및 명단[엑셀파일 : [2015-상호협력교육신청서-원도급업체](#)]
- 제출 및 문의처 :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(educak@cak.or.kr)
 - 교육일정(교육일, 교육내용), 수료관련(출결사항, 수료증):조광현 부장(02-3485-8310)
 - 교육신청(위탁계약서 및 명단 접수, 교육비관련(입금, 세금계산서, 환불) 김민규 사원(02-3485-8454)



1. 협력업체에 <②명단작성 서식> 통보

‘2015-임직원 상호협력교육생 명단-협력업체’파일 이메일에 첨부하여 통보

2. <③신청명단> 회수 : 협력업체에서 작성한 파일 및 출력물 이메일(팩스)로 수신

※ 협력업체로부터 메일로 회신받은 ‘2015-임직원 상호협력교육생 명단-협력업체’ 엑셀 파일과 별도로 작성 분을 출력하여 회사 및 담당자란에 날인(서명)한 문서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저장한 전산파일(pdf, jpg 등 이미지파일)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(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제공한 협력업체 교육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증빙서류)

※ 교육 참가신청한 협력업체 임직원의 재직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)도 내년 상호협력신고에 대비하여 미리 받아 두십시오.

3. <④교육 신청서>(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및 교육생명단) 작성

가. ‘위탁계약서’ 시트에 ‘교육일’, ‘회사명’ 등 노란색 부분만 입력

나.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‘2015-임직원 상호협력교육생 명단-협력업체’의 빨간 점선 부분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복사하여 ‘2015-상호협력교육신청서-원도급업체’의 ‘명단’시트의 빨간 점선 영역에 각각 *값만 붙여넣기

*** 값만 붙여넣기** : 복사 후 붙여넣을 영역(‘명단’시트의 B5셀)에 마우스 왼쪽버튼 누른 후 팝업메뉴에서 ‘선택하여 붙여넣기(S)..’ 선택하여 메뉴창에서 ‘값(V)선택

6 교육비

- 신청기간(교육일 7일전)에 교육신청서 접수와 같은 일자에 입금 원칙
- 70,000원(1인당, 부가세 없음, 교재비, 점심식비, 음료 등 일체 포함)
 - ※ 교육비 입금 후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교육에 불참한 경우 교육비는 환불됨
- 교육비 납부계좌

예금주 : 대한건설협회, 계좌번호 : 143-13-19429-0(외환은행)

7 상호협력평가

평가근거

-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및 제44조
- 국토부고시 제2013-199호(2013.4.25.)

평가방안

- 아래 표의 “가”와 “나”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적용

가. 위탁교육에 참가한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$= \frac{1) \text{위탁교육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}}{\text{총협력업체 법인수}}$	나.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= 위탁교육지원에 의해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				배 점
	협력업체 수	1,000개사 이상	500개사 이상	500개사 미만	
60%이상	교 원 인 원 수	200인이상	160인이상	120인이상	5점
40%이상~60%미만		160~200인미만	120~160인미만	70~120인미만	4점
20%이상~40%미만		120~160인미만	80~120인미만	40~70인미만	3점
10%이상~20%미만		80~120인미만	40~80인미만	20~40인미만	2점
10%미만		80인 미만	40인 미만	20인 미만	0점

○ 상반기 교육지원분 가중치 적용

- 1~8월중 교육지원시 법인수 및 인원수를 1.2배로 인정
* 연중 분산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
- (예시)법인수는 협력업체100개사 기준, 인원수는 협력업체1,000개사이상 기준

구 분	상반기수료	하반기수료	합계(인정)	점 수	비 고
법인수	40 (48)	12	52 (60)	5점	△8
	47 (56.4)	4	51 (60)	5점	△9
인원수	120 (144)	56	176 (200)	5점	△24
	150 (180)	20	170 (200)	5점	△30

※ 법인 및 인원수를 1.2배로 적용, 소수점이하 절사

◆ 상호협력평가 우대사항

가. 평가결과 우대내용

구 분	95점이상	90~94점	80~89점	70~79점	60~69점	비 고
조달청 등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	3.0	2.0	1.5	1.0	0.5	*신인도 항목 평가시
지자체 적격심사시 가점	3.0		2.2	1.4	0.5	
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액	6%		5%	4%	3%	*최근3년간공 사실적평가액

※ 60점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

나. 상호협력교육지원(평가결과 100점중 교육지원 최대 5점 반영)

다. 우대기간

-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: 매년 발표일~익년 발표 전일
-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: 매년 발표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
(매년 7.31일 공시)

◆ **교육과정** ※ 교육과정 선택협의 가능

구분	기본과목(필수)	선택과목	비고
과정	-건설산업기본법 -하도급거래공정법	-건설현장 노무관리 -건설현장 안전관리 -건설공사 현장관리 -건설현장 원가관리 -입찰제도 실무 -건설업 회계관리 -건설업 부가세관리	1일교육
시간	-과목별 1시간 또는 2시간	-과목별 2~4시간 -2개과목 선택가능	총 8시간

◆ **동 교육은 「대.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.지원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사항(교육·훈련 지원 분야)에 반영**

□ (인정범위) 노동부 등 관련기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교에 교육과정을 위탁한 실적만 인정

* 그룹 내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모든 계열사의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 전에 어느 계열사의 협력사 임직원인지 명확히 구분한 실적만 해당 계열사의 협력사 교육실적으로 인정

□ (평가방식 및 기준)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

- 충실도(30점)는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로 평가하고, 이행도(70점)는 교육훈련 참가 협력사 비율 또는 위탁인원 수 기준으로 평가

□ 교육·훈련 지원 분야(이행도) 배점 개정내용

교육훈련 참가 협력사 비율 (총 협력사수 대비 교육훈련 참가 협력사 수)	위탁인원 수	배점		
		제조	건설, 정보서비스	도소매, 통신
80% 이상	400인 이상	1점	3점	4점
60% 이상 ~ 80% 미만	300인 이상 ~ 400인 미만	0.75점	2.25점	3점
40% 이상 ~ 60% 미만	200인 이상 ~ 300인 미만	0.50점	1.50점	2점
20% 이상 ~ 40% 미만	100인 이상 ~ 200인 미만	0.25점	0.75점	1점
0% 초과 ~ 20% 미만	1인 이상 ~ 100인 미만	0.10점	0.30점	0.40점
실적 없음	실적 없음	0점	0점	0점

* 2개 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을 선택 적용.

□ 공정거래 및 협약이행 평가 인센티브 내용

평가등급	평가점수	인센티브 제공내용
최우수	95점 이상	-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-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- 법인·개인 표창 수여(위원장 이상)
우수	90점 이상	-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-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- 법인 표창 수여(위원장)
양호	85점 이상	-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- 법인 표창 수여(위원장)

- 별첨 : 1. 교육생 명단작성 요령(협력업체용) 1부
2. 교육 일정표 각 1부
3. 교육장 안내도 1부.

(별첨1)

교육생 명단작성 요령(협력업체용)

1. 엑셀 파일 열기

‘2015-임직원 상호협력교육생 명단-협력업체’ 파일

2. 신청사항 입력

가. 교육일 : ‘월-일’ 입력 (예: 2015년 4월 1일 → “4-1”)

나. 회사 전화, 교육생휴대전화번호 : “-”없이 숫자만 입력
(예: 02-3485-8454 → “0234858454”)

다. 생년월일 : 주민번호앞 6자리 입력

※ 하늘색 바탕 셀은 자동입력란으로 데이터 입력 금지

- 번호, 회사명, 회사전화, 교육일 : 교육생 성명 입력하면 위쪽 표의 입력 내용 자동입력
- 개인정보 제공 동의 : 교육생 성명, 생년월일, 교육생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‘동의함■’이 자동입력

3. 원도급업체에 제출

가. 엑셀파일: 이메일로 전송

나. 엑셀파일 출력물 : 작성한 엑셀파일을 인쇄하여 회사 및 담당자란에 날인(서명)

- 문서 : 팩스로 전송
- 전산파일(스캔하여 pdf, jpg 등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파일) : 이메일로 전송
(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제공한 협력업체 교육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증빙서류)

다. 교육신청한 임직원의 재직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) : 팩스 또는 이메일

(별첨 2-1) '15. 6.2(화):제13차

제13차 서울지역 회원사 협력회사 임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

강의 시간		교과명	교육 내용	강사
09:00 ~ 12:00	3	건설현장관리 핵심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관리 개요 ○ 현장관리 및 상세시공계획 ○ 설계검토 방법 및 순서 ○ 사업관리 및 원가절감방법 	김덕준 기술사
	1	중 식		
13:00 ~ 16:00	3	건설현장 안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안전관련법령 이해 ○ 재해예방 종합대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계부처 합동 ○ 건설현장 안전관리 	김세영 기술사
16:00 ~ 17:00	1	건설산업기본법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해설 ○ 건설업 등록기준 ○ 건설기술자 배치 및 시공관리 	신수길 부장 (대한건설협회)
17:00 ~ 18:00	1	하도급법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법 개요 ○ 하도급법 주요 내용 ○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위반사례 	
합계	8			

※ 교육과정 편성 사정으로 인해 강사 및 교육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(별첨 2-2) '15. 6.3(수):제14차

제14차 서울지역 회원사 협력회사 임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

강의 시간		교과명	교육 내용	강사
09:00 ~ 12:00	3	건설수주전략 및 자재원가절감	1.건설 수주영업 실무 ○ 클라이언트가 평가하는 영업 담당자 ○ 비공개 정보 유입 확보방법 ○ 협상력 테스트 및 증대 방법 2.자재 원가절감 방안 ○ 구매원가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○ 시황성 자재의 수급전략 방법 ○ 구매관리 및 자재 시장의 트렌드 변화	양규영 대표 (테크넷 21)
	1	중 식		
13:00 ~ 16:00	3	건설 회계/세무	○ 건설 회계/세무 주요 내용 ○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 ○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 ○ 건설업 세무조사 실무	이종현 세무사 (태성회계법인)
16:00 ~ 17:00	1	건설산업기본법 실무	○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해설 ○ 건설업 등록기준 ○ 건설기술자 배치 및 시공관리	신수길 부장 (대한건설협회)
17:00 ~ 18:00	1	하도급법 실무	○ 하도급법 개요 ○ 하도급법 주요 내용 ○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위반사례	
합계	8			

(별첨 2-3) '15. 6.10(수):제19차

제19차 서울지역 회원사 협력회사 임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

강의 시간		교과명	교육 내용	강사
09:00 ~ 12:00	3	건설공사 원가관리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비 적산 기준 ○ 공사비 산정방법 ○ 공사원가구성과 요소별 산정시 유의사항 ○ 표준품셈 ○ 실적공사비 제도 	김국현 전문위원 (대한건설협회)
	1	중 식		
13:00 ~ 16:00	3	건설현장 노무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년 개정 노동법 및 이슈사항 ○ 건설현장 임금 관리방안 ○ 근로계약 체결과 해고 ○ 근로시간과 휴게, 휴일관리 ○ 건설현장 산재관리 	이학균 노무사 (열린노무법인)
16:00 ~ 17:00	1	건설산업기본법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해설 ○ 건설업 등록기준 ○ 건설기술자 배치 및 시공관리 	김주호 차장 (대한건설협회)
17:00 ~ 18:00	1	하도급법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법 개요 ○ 하도급법 주요 내용 ○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위반사례 	
합계	8			

(별첨 2-4) '15. 6.24(수):제27차

제27차 서울지역 회원사 협력회사 임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

강의 시간		교과명	교육 내용	강사
09:00 ~ 12:00	3	건설공사 원가관리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비 적산 기준 ○ 공사비 산정방법 ○ 공사원가구성과 요소별 산정시 유의사항 ○ 표준품셈 ○ 실적공사비 제도 	김국현 전문위원 (대한건설협회)
	1	중 식		
13:00 ~ 16:00	3	건설현장 노무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년 개정 노동법 및 이슈사항 ○ 건설현장 임금 관리방안 ○ 근로계약 체결과 해고 ○ 근로시간과 휴게, 휴일관리 ○ 건설현장 산재관리 	이학균 노무사 (열린노무법인)
16:00 ~ 17:00	1	건설산업기본법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해설 ○ 건설업 등록기준 ○ 건설기술자 배치 및 시공관리 	신수길 부장 (대한건설협회)
17:00 ~ 18:00	1	하도급법 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법 개요 ○ 하도급법 주요 내용 ○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위반사례 	
합계	8			

(별첨3)

교육장 안내도

<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 평생교육원(논현동 건설회관 1층)>

※ 건설회관 주차장은 **유료**로 운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십시오.



*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-2(건설회관 1층) * 전화 : 1588-6912
* 전 철 :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(도보 7분거리)

 지하철	<p>7 7호선 학동역 하차(10번출구) 도보 5분 소요</p> <p>3 3호선 압구정역 하차(2번출구), 3011(지선) 도보 15분 소요</p>
 버스	<p>관세청 역 간선 141, 401, 640</p> <p>관세청 역 지선 3011, 3414, 4431</p> <p>관세청 역 순환 41</p>